

국회·선관위 봉쇄·정치인 체포... '내란 수괴 혐의' 조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시

尹 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공수처, 48시간내 조사 마쳐야 구속영장 발부시 20일 구금 가능 尹, 진술거부권...“수사권 없어” 유의미한 진술 확보 여부 ‘관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시도한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8일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곧바로 정부과천종합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로 이송됐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공수처 청사까지는 차로 20~30분 거리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를 통해 공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 등 앞서 기소된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께부터 주변인들에게 계엄에 관한 언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에게 국회 출입 봉쇄 등을 직접 지시하고 주요 정치 인사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다수 발견됐다. 또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해 시설을 봉쇄하고 서버 탈취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체포영장 역시 불법으로 발부됐다’고 주장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는 입장문을 반복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전 조사는 오전 11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1시30분께 끝났다. 오후 2시40분께부터는 오후 조사가 진행됐다”며 “오전에는 이재승 차장이, 오후에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녹화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의자 측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 호칭에 대해서도

그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사 전 (대통령이) 말한 내용이 일부 있는데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전 조사에서는 윤갑근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조사 후 점심으로는 공수처에서 주문한 도시락이 제공됐다.

다만 대통령 식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호송차량이 아닌 대통령 경호차량을 탄 점에 대해서는 “사건 혐의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수갑이 채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공수처의 수사 시계는 빠르게 돌아갈 전망이다. 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동안 피의자를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지만, 공수처에 대통령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구속 기한 만료 전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이같은 경우 구속 기한을 10일씩 나누기로 합의한 바 있기에, 윤 대통령이 구속되더라도 공수처에게 주어질 수사 시한은 그리 길지 않은 상황이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질문지 ‘200쪽’... 1차 집행 무산 이후 내용 보강

공수처, ‘내란 혐의’ 조사 돌입 “총 싸서라도” 등 구체 지시 담겨 ‘복종 공작’ 외환죄 적용도 관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지 12일 만인 15일 2차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첫 영장 집행 실패 이후 신병 확보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진 만큼 질문지 내용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질문지는 200페이지 이상이다. 1차 때보다 보강된 수준”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내란 우두머리’ 피의 사실을 범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과 수사 기록 등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 혐의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피의자들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윤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상세히 적시했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중복 좌파들을 이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난다”며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

검찰은 당시 국무회의가 비상계엄 선포 안전을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현장 지휘관들에게 전화해 적극적으로 상황을 지휘했으며, 적어도 지난 3월부터 김 전 장관 등과 계엄을 수차례 논의한 정황도 발견됐다.

검찰 공소사실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달 3일 늦은 오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분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싸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3분께 이후에도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는거니 계속 진행해”라며 계엄을 수차례 선포할 의지가 있었던 정황도 드러났다.

광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에게도 “문짜를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끼집어내라”,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가 단순히 ‘경고성’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수사 기록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위법·위헌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선포·발령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국회, 선관위 등을 장악한 다음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 시도하고, 선관위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 시도한 정황 등도 조사 대상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속 ‘복공격을 유도’ 등 내용을 바탕으로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시

尹 “불법이지만 유혈사태 막기 위해 출석 응하기로”

관저 출발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수사권 없는 공수처, 불법 자행”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체포되기에 앞서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로 출발하기 직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오늘 이들이(공수처·경찰) 경호 보안구역에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지만 출석에 응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하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영상 캡처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안타깝게도 이 나라

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철칙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선욱 기자

“체포영장 따라 구속영장도 서부지법 청구”

공수처 “관례상 그렇게 하는 것” 영장 발부시 특수본 이첩 관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이 공수처 방침이다.

15일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통상 (체포영장을) 청구한 법원에 한다”며 “의무는 아니다. 다만 관례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다음날인 31일 발부받은 바 있다. 대통령 측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은 불법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서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기한 만료 후인 이달 6일에도 다시 서부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다음날인 7일 재차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

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서부지법 영장 청구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 후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라도 공수처는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 대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공수처는 10일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에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기소권이 없어, 특수본이 추가 10일 동안 조사를 진행한 뒤 중앙지법에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시